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 〉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32호)

2025. 11.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직무태만 또는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임명권자 또는 해촉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등의 사유 발생 시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가 해당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2(위원의 해임·해촉 등) ①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u>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u> ② <u>교육부장관은 위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u>
--	--

나. 검토의견

□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은 국사편찬위원회 운영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임. 동 법률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임.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 공무원이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구조임¹⁾.

같은 법 제9조²⁾는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의 자격 등 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을 규정하여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 법률 시행령은 위원의 해촉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³⁾.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해촉 사례로는, 동 시행령 조문이 신설되기 이전인 2013년에 비상임위원 1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원에 의한 해촉이 이루어진 사례가 유일함.

□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 해촉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권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교육부장관의 위원장 해임 건의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즉,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장까지 포함하여 해임·해촉 제도를 법률 차원에서 명문화하려는 취지임.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개정안에 따르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과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이 법률에 마련되어 위원회의 운영 책임성이 강화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성실한 직무수행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이미 시행령에 위원 해촉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갖는 입법 실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개정안의 취지는 법적 효력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일반적으로 법률과 시행령에 규율하는 내용의 구분 기준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임.

위원의 해촉 사유가 국민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시행령 수준의 규율로도 충분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다만, 위원회의 공공적 성격과 위원의 공직적 책무성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근거를 명확히 두는 것이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견해도 병존함.

□ 둘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함⁴⁾. 원칙적으로 정무직 공무원은 징계의 대상이 아니며,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해임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 통상적임. 또한, 현행 헌법은 정무직 공무원인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국무총리에게만 부

4)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구성) ②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한다.

여하고 있음⁵⁾.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장관에게 위원장 해임 건의권을 별도로 부여하는 것이 현행 인사 제도 원칙 및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가 필요함.

□ 셋째, 해임·해촉의 사유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임의적 판단의 여지가 존재할 우려가 있음. 이 경우, 해임·해촉 결정의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 또는 절차적 통제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참고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독립기념관법」 등에서도 유사하게 임원 등의 해임·해촉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와 정부위원회 등에서 심사 중이므로, 이들 법률안의 심사 경과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유사 취지의 법률안 >

연번	의안번호	법률안명	대표발의자	소관 위원회
1	1333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정무위원회
2	13334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교육위원회
3	1333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행정안전위원회

5) 「대한민국헌법」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일부수정

- 개정안은 불명확했던 대통령의 해임권의 존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실익이 있으므로 동의함
- 현행법은 제6조제2항에서 “임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해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교육부장관의 해임 건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해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입법에 해당함.
- 법령 해석 시 입법 의도를 고려하는 만큼, 해당 입법은 해임권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임. ※ 참고 판례(2011두5001)
- 다만, 현행법 제6조제2항에서는 “임명”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안 이유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면”으로 개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법에 규정되는 위원의 해촉사유를 위원장에 적용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견 없음

○ 국사편찬위원회: 신중검토

-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규정은 현행 한국사보급법 시행령 제2조에 이미 존재함. 따라서 위원의 위촉과 해촉은 이미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부장관의 권한이므로, 법률상의 별도 해임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차관급)이며, 현행 한국사보급법 제6조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위와 같은 대통령의 임명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78조에 의거한 것임.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과 면직은 이미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임. 유사 사례 중에서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문을 둔 경우를 찾지 못함.
- 예컨대, 국사편찬위원회와 동일하게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 제6조에 위원회의의 구성, 위원의 임명 및 위촉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장과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문 의 처

02)6788-5184